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희승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1898
----------	-------

발의연월일 : 2026. 10. 15.

발 의 자 : 박희승 · 윤준병 · 이언주
장종태 · 김성범 · 한민수
이주희 · 한병도 · 김우영
김남희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업역 칸막이 규제가 경쟁을 차단하고 다단계 하도급 병폐를 고착시킨다는 지적에 따라 2018년 「건설산업 혁신방안」과 노·사·정 대타협을 거쳐 법률 제16136호로 현행법을 개정, 2021년 공공공사 · 2022년 민간공사부터 종합 · 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고 2030년 단일 업종 전환 로드맵을 확정하였음.

그러나 당초 합의는 공사에정금액 2억원 미만 전문공사만 2023년 말까지 한시 보호하고 2024년부터 전면 개방하는 것이었음에도, 전문업계의 반복된 요구로 보호구간이 3억 5천만원을 거쳐 4억 3천만원 미만으로 두 차례 확대 · 연장되어 2026년 12월 31일까지 유지되고 있음.

그 결과 전문업체는 모든 종합공사에 진출할 수 있는 반면, 종합업체는 전체 전문공사의 90%가 넘는 구간에 6년째 진출이 봉쇄되어 상

호 개방이 아닌 일방향 개방 구조가 고착화되었으며, 중소기업이 대부분인 종합업체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음.

이에 노·사·정 대타협의 원상 회복을 위하여 보호구간을 당초 합의 수준인 2억원으로 환원하고, 그 효력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전문업체 간 공동도급 허용 시기를 2030년 1월 1일부터로 정비하여 상호시장 개방이 합의대로 이행되도록 함으로써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상호시장 개방 원칙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6조 제1항제4호 단서 등).

법률 제 호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4호 단서 중 “4억 3천만원”을 “2억원”으로 한다.

법률 제16136호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제3항 중 “2027년 1월 1일”을 “2030년 1월 1일”로 한다.

법률 제19865호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29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설공사 시공자격의 적용례) 제16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입찰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6조(건설공사의 시공자격) ① 건설공사를 도급받으려는 자는 해당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업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도 도급받을 수 있다. 1. ~ 3. (생략) 4.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제8조제2항에 따라 시공 가능한 시설물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공사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급받는 경우. 다만, 공사예정금액(「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비를 포함한다)이 <u>4억 3천만원</u> 미만인 전문공사를 원도급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5. ~ 7. (생략) ② ~ ④ (생략)	제16조(건설공사의 시공자격) ① ----- ----- -----. ----- ----- -----. 1. ~ 3. (현행과 같음) 4. ----- ----- ----- ----- -----. ----- ----- ----- <u>2억원</u> ----- -----. 5. ~ 7.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법률 제16136호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시행일) ①·② (생략)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6조 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u>2027</u> <u>년 1월 1일</u>부터 시행한다. ④ (생략) 법률 제19865호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유효기간) 제16조제1항제4 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u>2026년</u> <u>12월 31일</u>까지 효력을 가진다.	법률 제16136호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시행일) ①·② (현행과 같 음) ③ ----- -----<u>2030</u> <u>년 1월 1일</u>-----. ④ (현행과 같음) 법률 제19865호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유효기간) ----- -----<u>2029년</u> <u>12월 31일</u>-----.
--	--